

지정번호: 제 호

## 인증기관 지정서

1. 기관 또는 단체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소재지:
4. 인증업무의 범위:
5. 인증 유효기간:

「축산법」 제4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2항에 따라 위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